

# **이 사회 규정**

## **제1장 총 칙**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## **제2장 구 성**

제4조(구성) 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,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의장) ① 의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.

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**제3장 회 의**

제6조(종류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.

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(소집권자)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소집권자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절차)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(1주간)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9조(결의방법)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부의사항)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

####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(1) 주주총회의 소집

(1-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
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
- (3)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449조의2 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- (4) 정관의 변경
- (5) 자본의 감소
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9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- (10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2) 현금·주식·현물배당 결정
- (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4) 이사·감사의 보수
- (15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(16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7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## 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- (3) 자급계획 및 예산운용
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- (5)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선임 및 해임
- (6) 공동대표의 결정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(10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(11-1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11-2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- (12)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
- (13) 급여체계, 상여 및 후생제도
- (14)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
- (15)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
- (16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- (17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18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19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### 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투자에 관한 사항
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(4) 결손의 처분
- (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(6) 신주의 발행

(7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
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
(9) 전환사채의 발행

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
(11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
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
(13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
(14) 자기주식의 소각

#### 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
(1-2) 이사의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

(2) 타회사의 임원 겸임

#### 5. 기타

(1) 중요한 소소의 제기

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
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
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
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1조(이사회 내 위원회)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4. 정관에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2조(감사의 출석)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3조(관계인의 출석)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4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원)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(의사록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

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6조(간사)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

- ② 간사는(재무그룹장)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9조 및 제10조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1차 개정 : 2023년 5월 3일 개정

2차 개정 : 2024년 2월 5일 개정